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(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)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“사업계획의 내용 중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.

1. 학생 수 추계 대비 학생 수 증가가 수반되는 요인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
2. 통학안전, 일조, 대기,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
3. 교지 위치, 면적 및 형태 등 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각시설

가. 교육감이 특정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기 이전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·고시된 시설로서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일 것일 것

나.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

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를 승인받은 때의 처분 용량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때의 처분 용량을 말한다) 합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처분 용량 증가가 없을 것

라. 절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할 것

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나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22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조 또는 제3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

다.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

라.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, 주차장,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것

마. 절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할 것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) (①~⑤ 생략) (신 설)	제17조(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) (①~⑤ 현행과 같음) ⑥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(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)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제20조(사후영향평가서 제출 등) (①~③ 생략) (신 설)	제20조(사후영향평가서 제출 등) (①~③ 현행과 같음) ④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“사업계획의 내용 중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. 1. 학생 수 추계 대비 학생 수 증가가 수반되는 요인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2. 통학안전, 일조, 대기,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3. 교지 위치, 면적 및 형태 등 학교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

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)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(신 설)

있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각시설가. 교육감이 특정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기 이전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·고시된 시설로서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일 것

나.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

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(業)을 말한다.

(신 설)

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를 승인받은 때의 처분 용량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때의 처분 용량을 말한다) 합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처분 용량 증가가 없을 것
라. 절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할 것

④ (현행과 같음)

3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나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22호부

터 제23호까지, 제26조 또는 제3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
다.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
라.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, 주차장,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것
마. 절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할 것